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Law in Church Communities

고 세 일 (Se-il Ko)**

ABSTRACT

When we think of laws in social communities, we may consider them as burdens to “do or not do.” Also, we might think of our social reality: “the rich are innocent, the poor are guilty.” This reality concerning laws might influence brothers’ and sisters’ perspectives of laws in church communities as well. However, ironically many laws in pre-modern and modern societies have come from Bible, the Word of God.

If we look at laws in the Bible, there are law about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at God spoke to Adam and Eve, the Ten Commandments, and laws of God which God gave Israelites after God had saved them from Egypt in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there are scenes in which Jesus criticizes the Pharisees concerning laws of God. In addition, the Apostle Paul provides two different views of laws of God.

The present negative perspective of laws of God in church communities might be influenced by the Reformers or by misunderstanding their ideas. However, their slogan “by Faith alone,” is not contracting to laws of God. The contrasting opinions of laws and grace of God may come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entire Scriptures,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We can interpret laws and gospel of God with harmony. Particularly moral law of God can provide norms of practice in church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2월 21일 최종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9일,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고치고 다듬은 것으로, 2020년 충남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지원받은 논문임을 밝힙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5호, seilko@cnu.ac.kr

communities. When we interpret laws of God in this way, we can restore the heart of the early churches in Acts 2:43-47. Also we can see and check laws of our world with laws of God.

Key words: law, gospel, commandment, moral law, gospel of John

I. 들어가는 말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실과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교회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법’을 좋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좋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대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의 저자는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설명하면서, ‘교회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곽윤직·김재형, 2015: 165 ; 김준호, 2017: 694-695 ; 김형배 외, 2016: 122 ; 박동진, 2016: 63-64 ; 백경일, 2022: 639-640 ; 송덕수, 2021: 620-623 ; 양형우, 2022: 132 ; 윤형렬, 2013: 148 ; 정기웅, 2015: 212-213 ; 지원립, 2022: 112-114 ; 홍성재, 2016: 140-142). 예를 들어,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은 교회와 지교회 사이의 비법인사단의 탈퇴를 살피면서, 사회의 상당성을 잃은 선교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지를 다룬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교회공동체의 판례 사안을 바라보면, 교회공동체는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 교회공동체의 분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판례 사안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법원은 18세기에는 목시신탁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하다가, 19세기 말 이후에는 교단준중원칙의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황규학, 2014: 40-70 ; 120-143).

교회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분열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다툼이 교회공동체의 분열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조봉상 목사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법은 신약성경에서 좀 더 강화되었고, 어떤 법은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법이 구원과 관계있는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봉상, 2018: 6).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성경은 ‘복음’이라는 사고도 옳지 않다. (Gupta, 2020: 57-58; McGraw, 2016: 76). 또한 하나님의 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구약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함께 복음이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김형익, 2018: 27, 31).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 이 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한다. 중심이 되는 본문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둘째, 성경과 근대법의 관계를 말한다. 셋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넷째, 교회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을 말한다. 다섯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덕법에 대해서 말한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II. 성경과 하나님의 법, 계명

1. 하나님의 법이라는 용어

나는 성경에서 율법(律法)을 잘못된 번역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 옮겼는지 모른다.²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서 사람들의 만든 법을 구별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법률’(法律)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런데 율법(律法)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교회공동체에서는 율법이 일상의 삶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본성서협회(日本聖書協會)의 신공동역성서(新共同訳聖書, 1988)와 중국의 환구성경공회(環球聖經公會)의 신역본성경(新译本聖經, 1992)도 모두 율법(律法)으로 옮긴다. 이러한 점은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예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규례’로 옮기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규는 예로 든 규칙이라는 뜻이고, 규례는 지켜야 할 법이라는 뜻으로 ‘율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쓴다. 따라서 ‘예규’와 ‘규례’는 ‘율법’과 ‘법률’의 관계와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법’이라는 말이 더 옳다고 여긴다. 율법과

1)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세부 주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큰 관점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는 것을 밝힌다.

2) 신약성경에서 쓰는 그리스어 νόμος(노모스)를 보통 ‘율법’으로 옮긴다. 그런데 νόμος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관습, 규칙, 원칙, 규범, 둘째, 제정법의 총체, 법,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중한 기록한 기록의 총체, 신성한 규정(sacred ordinance). Bauer's & Danker, 1979: 677-678.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쓰는 히브리어 토라(תּוֹרָה)는 좀 더 다양한 뜻을 갖는다. 첫째 지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도 ① 사람의 가르침, ② 하나님의 가르침, ③ 예언하는 가르침의 총체, ④ 메시아 시대의 가르침을 뜻한다. 둘째, 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뜻도 세부에서는 ① 구체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특별한 법, ② 법의 총체를 뜻한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뜻한다. 따라서 히브리어 토라를 단순히 ‘율법’이라고 옮길 때, 말하는 사람의 ‘토라’와 듣는 사람의 ‘토라’가 다른 개념일 수 있다. (Brown, et al., 1906: 435-436). 히브리어 토라를 70인역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옮길 때 쓴 단어가 노모스이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기는 시기에 그리스어 노모스는 영어의 law에 상당히 가까운 말이었다. (Jobes & Silva, 2015: 91-92).

법률처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이 같아지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모두 법(law, loi, Rechte)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도 로마서 7:22은 ‘하나님의 법’으로 갈라디아서 6:2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로마서 7:22과 갈라디아서 6:2에서 말하는 ‘법’을 ‘율법’과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O’Donovan은 모든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O’Donovan, 2014: 28). 그밖에 시편 37:31과 이사야서 1:10이 “하나님의 법”으로 옮긴다. 시편 37:34은 “주님의 법도”로, 시편 40:8은 “주님의 법”으로 옮긴다. 예레미야서 5:4-5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옮기고 있다. 신명기 17:14-18은 이스라엘 왕들의 법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제목을 “이스라엘 왕도”라고 옮긴다. 또한 갈라디아서 5:23은 “막을 법(νόμος, 노모스)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살아가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쓰고, 직접 인용한 성경 구절에서는 ‘율법’으로 쓴다는 것을 밝힌다.³

2. 성경과 근대법의 관계

자연법은 실정법 없이 또는 실정법과 충돌할 때에도 구속력이 있다. (Seelmann, 윤재왕 역, 2010: 186). 자연법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성이 많은데, 예를 들어, 자연법은 약속의 도덕적 구속력에 대한 객관적 기초를 제시한다. (Hogg, 2011: 76). 칼뱅은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구속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새겨진 법질서로 말미암아 정의와 선한 정부가 나온다고 한다. (Gordon, 이재근 역, 2018: 224). 또한 칼뱅은 성문법은 단지 자연법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Calvin, 문병호 역, 2009: 56).

그런데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관련성이 있다. 라렌츠 교수는 민주국가에서 일정한 지배구조가 필연적으로 있는데, 이런 지배구조의 관계에는 언제나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은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법치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다. (Larenz, 양창수 역, 1995: 137-138). 현대 사회의 많은 법은 근대 사회를 표본으로 한 것이고, 표본의 근간을 합리성에 둔다. 근대사회 이후에 사회공동체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설명한다.

동양의 법가 사상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 유가(儒家) 사상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는 측면에서 인(仁)과 예(禮)로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에 법가(法家) 사상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측면에서 법(法)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철학에 바탕을 둔다. 배원달 교수는 “법가(法家)는 전국

3) 개역개정 성경본과 견주어, 새번역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충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 성경 인용은 새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대에 출현하여 유가(儒家)로 대표되는 자연법적인 예(禮)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정법의 우위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배원달, 1989: 675).

현재에 쓰고 있는 많은 법 제도가 성경에서 나왔다. 근대와 현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근대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본질 문제로 ‘인권(human rights)’을 다룬다. 성경에서 인간은 창조영역에서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와 관련해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창세기 1:27).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다. 그러나 이 부분을 깊이 탐구하지 않아도,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독특하다. 성경은 이 독특한 가치를 여러 곳에서 말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여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마태복음 6:26). (Grove et al., 2022: 4768). 또한 한동구 교수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 또는 황제와 같은 존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땅 위에 사는 신(神)의 대리자로 인식했다고 설명한다.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황제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한동구, 2020: 152). 그런 점에서 인권의 근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거는 인권에 대한 어떤 근거보다 강력하다. 공두현 교수는 르네상스를 거친 뒤, 18세기 칸트 철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 개념이 실천이성 능력을 갖는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공두현, 2022: 854).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자연의 법 계명이 실천이성에 대한 관계를 설명했다. (Aquinas, 이진남 역, 2022: 137).

일반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을 잔인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누이 디나가 당한 것에 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동해보복’을 고려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출애굽기 21:23-25은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을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작은 부상에 대해서 죽이는 보복을 피해자가 당한 만큼만 보복할 수 있다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동해보복의 사상은 고대 사회에서 전환점이 되는 혁신하는 법이었다.

형사소추에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신명기 19:15)은 오늘날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작동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

거로 삼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이혼할 때,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성경 말씀(신명기 24:1-4)도 각국에 이혼을 제한하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법원도 여전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포도를 딸 때 또는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떨어진 것을 줍지 않도록 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레위기 19:10, 23:22). 돈을 꾸어주어도 돈을 갖도록 재촉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담보물의 경우여도 돈을 빌린 채무자를 보호하는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22:25-26). 이러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소비채주를 위한 민법 규정이다. (김형배, 1997: 523-525 ; 박동진, 1086-1087 ; 송덕수, 2022: 241-242 ; 한삼인, 2011: 363-368).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608조는 전2조의 규정(제606조와 제607조)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보호하는 장치로도 작동하고 있다. (김형배, 1998: 82-87 ; 김형배, 1997: 405-421 ; 김형배, 2007: 4-5 ; 하경호, 2013: 471-473). 또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범으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 각국의 법에서 긴급 구조의무를 규정하는 현행법(예를 들어, 상법 제882조~제895조)이 되었다. 예를 들어, 상법 제882조는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인정한다. 이러한 법리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민법의 사무관리 규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민법 제734조~제740조).

3. 성경 속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시고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Beasley-Murray는 하나님의 법의 명령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으로 설명한다. (Beasley-Murray, 2020: 247).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언약’과 관련해서도 현행 계약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법(私法)의 중심이 되는 민법에는 두 책임 체계가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맺고,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contracts, contrats, Verträge)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불법행위’(torts, délits, Unerlaubte Handlungen)이다. 계약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책임이 ‘계약책임’이고,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책임이 ‘불법행위 책임’이다.

‘언약’을 ‘계약’과 구별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다. 이런 시각은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반면에 ‘계약’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 이해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⁴은 계약을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약속이다. 둘째는 기독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셋째는 법률상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둘째와 셋째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별해서, 계약의 두 번째 정의를 ‘언약’으로 개념 정의하고, 세 번째 개념을 ‘계약’으로 본다면 언약과 계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ברית”(브리트)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다. (최종태, 1999: 319-320). 또한 히브리어 브리트를 “약속”과 “협약”과 같은 말로 옮길 수도 있다. (김선중, 2015: 108). 히브리어 브리트의 어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단어는 ‘언약’과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언약’과 ‘계약’은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언약’도 둘 사이에 약속하고, 그 약속에 구속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속성에 비추어 보면, ‘언약’과 ‘계약’의 출발점은 같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창세기 15:5-21),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는 언약(창세기 21:22-34), 사라의 장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헷족이 맺는 언약(창세기 23:1-20), 야곱과 라반이 맺는 언약(창세기 31:43-56). 이러한 성경의 언약은 계약의 기초가 된다.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2:16-17),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맺는 언약의 말씀(창세기 9:9-17),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12:1-3; 17:1-10), 이삭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6:3-5),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창세기 28:13-15)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 그에 대한 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계약’에 도덕적인 가치를 많이 부여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의 격언뿐만 아니라, 계약을 법의 죄사슬로 인식한 로마법의 사고, 계약법에서 인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법을 적용하는 근원으로서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를 인정하는 것, 고의의 불법행위에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

4)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마지막 확인: 2022년 12월 11일).

496조의 원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법 영역에서 도덕 가치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청약의 구속력’의 법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 제527조). 법학에서는 율피아누스(Domitius Ulpianus, A.D. 170-223)가 말한 정의 개념을 자주 인용한다. “정의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돌려주려는 영원한 의지”라고 설명한다.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울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에서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마태복음 22:21; 마가복음 12:17; 누가복음 20:25)에서 라는 말씀에서 율피아누스의 정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법에 도덕 관념이 남겨져 있는 현상을 현승중 교수와 조규창 교수는 고대 로마법이 다른 고대 국가법처럼 법과 종교가 서로 구별되지 않고, 법과 종교를 같은 말로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때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종교 의무의 이행을 뜻했다고 한다. 그리스에서도 법과 도덕이, 이집트를 비롯한 동부 여러 국가에서도 법과 종교가, 중국에서는 법과 윤리가 서로 결합한 형태의 포괄적인 행위규범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중세의 게르만법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 (현승중·조규창, 1996: 209).

Fried 교수는 ‘약속으로 계약’이라는 도덕적인 계약이론을 주장한다. (Fried, 1981: 1-6). 또한 이러한 약속으로 계약이론에 대해서는 비판으로 신뢰로서 계약이론이 등장했다. (고영남, 2000: 174-275). 그런데 계약법에서 약속 이론과 약속 이론을 비판한 신뢰 이론 모두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도덕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계약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계약법 이론에서 법의 경제적 분석에 따른 이익과 효능의 측면으로 이전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예를 들어, Scott & Kraus, 2013: 775-779). 또한 이런 약속으로서 계약은 국내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을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국내법이 된다. (헌법 제6조 제1항). 그런 측면에서 국제조약과 국제협정도 이러한 약속으로서 언약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창세기 21:22-24), 이삭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창세기 31:43-52)이 맺는 평화협정(창세기 26:26-31)은 이러한 언약의 기초가 된다.

4. 교회 공동체의 법에 대한 시각

(1)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접근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명기 29:29, 30:10, 31:11-13, 32:46-47, 33:4; 여호수아기 1:7-8, 22:5, 열왕기상 2:3; 열왕기하 23:24; 역대지상 29:15; 역대지하 31:21; 에스라기 7:25; 느헤미야기 8:8-9, 9:3; 시편 1:2, 119:44; 잠언 28:7, 29:18; 이사야서 42:21; 예레미야기 9:13, 31:33; 학개서 2:11과 말라기서 2:7, 9; 4:4이 그렇다. 구약성경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신명기 10:16, 30:6; 예레미야기 4:4, 9:26; 에스겔서 44:7), 신약성경 사도행전 7:51과 로마서 2:29도 이런 구약성경의 태도를 따른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신다(마태복음 5:17-18, 20, 7:12, 22:37-40, 23:23; 마가복음 12:30-31; 누가복음 10:27-37, 16:17; 요한복음 7:19, 8:17, 10:34).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비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겉모습에만 충실한 것을 나무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겉모습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법에 담긴 진정한 뜻을 잃는 것을 경계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마태복음 5:17)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적과 진정한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마태복음 5:21-47).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ἑσθε οὖν ὑμεῖς τέλειοι)”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5:48).

(2)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자의 영향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시각은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성경 구절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아주 좋게 평가하여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32번 말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16에서 하나님의 법을 세 번 말하고, 2:19에서 두 번 말하고, 2:21에서 한 번 말한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여섯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 5, 11, 13, 17, 23과 24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하고, 3:10, 12, 19에서는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3:21에서는 세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모두 열여섯 번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4:4-5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4:21에서는 두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모두 네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 5:3-4, 14, 18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한 번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네 번 말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2, 13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한 번 말한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두 번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분은 3:19, 21; 4:4, 5; 6:2이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2:16, 19, 21; 3:2, 5, 10, 11, 12, 13, 17, 23; 4:21; 5:3, 4, 18; 6:13이다. 갈라디아서 3:24; 5:14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지대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 상황에서 적용하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권연경 교수는 이들이 보편적인 도덕 계명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계명에만 몰두한 것으로 설명한다. (권연경, 2013: 149).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규율하는 총체이다. (DeSilva, 2018: 417).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일어난 매로우 논쟁이 그러하다. 이 매로우 논쟁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에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각 진영의 논거로 오랫동안 다투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두 입장은 상반된다. 그러나 두 주장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Ferguson, 정성목 역, 2019: 14-16). 또한 Kaiser 교수도 하나님의 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가 오랜 논쟁의 대상인 것을 밝힌다. (Kaiser, 1990: 298).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사고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Johnson, 2019: 56;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지훈, 2017: 155-171 참조).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도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사고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로마서 5:1을 읽고, 루터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요한복음 3:15).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포하신다. 그런데 루터도 규율과 실천의 측면을 강조한다. (Luther, 1520: 414).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관행으로 여기던 악습을 선행으로 장려하던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루터 자신도 ‘선행’이라는 책을 써서, 삶의 실천 측면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루터가 거부한 것은 성유물 수집, 면죄부 구매, 성인 숭배와 성인에 대한 성인 묘지 순례, 사제가 따로 집전하는 사적 미사를 위한 기부, 사제와 수도사와 수녀의 혼인 금지 등의 행위로 공적을 쌓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거부했다. 루터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선행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좋은 선행과 구별해야 한다고 여겼다. (Hendrix, 손성현 역, 2017: 198). 또한 루터의 95개 반박문의 42-45조에서 선행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95개 반박문 44조는 “선행을 통해 사랑은 성장하고, 그 일을 통해 인간은 더욱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죄부로는 선하게 될 수 없고, 오직 형벌에서 벗어날 뿐이다.”라고 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9: 52).

또한 루터는 영적 생활의 실천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중요함을 말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7: 51-197).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으로 십계명이다. 루터는 이러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루터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최고의 보화로 여기고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Luther, 최주훈 역, 2017: 197). 그러면서 루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라는 로마서 7:22이다. (Luther, 1520: 415).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아도, 신약성경의 구원의 개념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다. (출애굽기 11:1-14:31).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출애굽기 15:22-26),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만나, 궤)을 주신다. (출애굽기 16:1-36). 다시 하나님은 모세가 바위를 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궤)을 주게 하신다. (출애굽기 17:1-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모이게 하시고,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9:4). 그리고 그 뒤에 십계명을 주시고(출애굽기 20:1-17),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 (출애굽기 21:1-23:33).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열개를 보아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3) 하나님의 법의 필요성과 마르키온의 영향

Barclay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훈육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망치게 하는 가장 나쁜 지름길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Barclay, 1972: 64). 하나님의 법은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법과 복음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대치시키는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킨다. 마르키온은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신약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한다. 마르키온(Marcion)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결함 있는 신으로 바라보았다. (McGarath, 홍병룡 역, 2011: 193). 이것이 마르키온의 사교(marcionism)이고, 그러한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Gard는 마르키온의 이원론

(dualism)과 가현설(Docetism)을 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이단이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마르키온의 교리 일탈을 비난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마르키온의 영향은 명시적으로 주장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Gard, 2010: 209-210).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생각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뜨린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17:1-26).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다는 정체성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나온다. 요한복음 3장(3:35); 5장(5:17-23, 26-27, 30, 36-37, 43), 6장(6:27, 32, 40, 44-45, 57, 65); 8장(8:16, 18-19, 28-29, 38, 42, 54-55); 10장(10:15, 18, 25, 30, 32, 36-38); 12장(12:26, 49-50), 13장(13:3); 14장 (14:6, 7-11, 16, 20-24); 15장(15:1-2, 9-10, 15-16, 24); 16장(16:3, 15, 23, 26-28, 32); 17장(17:1-2, 4-5, 7-10, 18, 21-23, 26); 18장(18:9, 11)과 20장(20:17, 21)이다.

(4) 실천 요소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말하는 개별 내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년’(שָׁנַת הַיְבֻל, Jubilee)에 대한 법(레위기 25:8-55),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법은 그 내용 자체가 축복이고(출애굽기 22:21; 23:9, 12; 레위기 19:10, 33-34; 23:22; 25:6, 35, 47; 신명기 10:19; 14:21; 23:7), 사랑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종과 이웃까지도 섬세하게 배려하셨다는 것이다(출애굽기 20:10). 복음과 하나님의 법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실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복음’으로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King, Jr., 2020: 225).

홍지훈 교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뜻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의롭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홍지훈, 2017: 149). 이러한 루터의 사상을 잘못 이해하여, 1577년 루터파 일치신조 6항에는 “그리스도인과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권하지 말고, 비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율법을 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훈, 2017: 151).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동은 1527년부터 시작되었

는데, 당시 루터의 동료였던 요한 아그리콜라가 중심 역할을 한다. (손규태, 2004: 145-149).

문홍선 박사는 종교개혁의 구호인 ‘오직 믿음으로’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Schreiner 교수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문홍선, 2008: 2). 존 스토틀 목사는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윤리를 든다. 그리스도인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 면에서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유대인의 성적표를 그리스도인의 성적표와 견줄 때, 유대인의 성적표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의 주된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또한 ‘율법주의자’라는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과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Stott, 정옥배 역, 2017: 100-101).

루터는 “모든 성서와 신학 전체의 인식은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바른 인식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했다.” (홍지훈, 2017: 153).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값어치 없는 엄청난 소중함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20; 요한복음 21:24; 사도행전 1:8).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때 내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신다.

5. 하나님의 법과 계명의 관계

(1) 요한복음의 새 계명의 뜻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영어 law, 헬라어 νόμος)을 좋지 않게 바라보지만, ‘계명’(영어 commandment, 헬라어 ἐντολή)을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3:34-35).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12-17에서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 사랑”(신명기 6:5)과 “이웃 사랑”(레위기 19:18)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37-40, 마가복음 12:29-31과 누가복음 10:26-28도 새 계명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러한 ‘새 계명’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새 계명’이 뜻하는 바를 세상의 교회가 아닌, 좁은 뜻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Haenchen, 1984: 117-118). 그러나 Keener는 유대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Keener, 2003: 923). Edwards는 새 계명의 뿌리가 레위기 19:18에 있다고 한다. (Edwards, 2004: 136). Carlson-Thies과 Chang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Carlson-Thies, 2021: 201 ; Chang, 2014: 264). Hartley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전형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한 예로 든다. (Hartley, 1992: 318). Chang은 사랑의 새 계명을 계속하는 변화(ongoing conversion)에 대한 소명으로 여긴다. (Chang, 2014: 269).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벽을 허물고, 자신을 다시 낮은 자세로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는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없다고 설명한다. Perry는 사랑의 새 계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Perry, 2008: 241).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Carson, 1991: 436). 따라서 이는 Estrada 교수가 말하는 교회공동체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개념과 연결된다. (Estrada, 2019: 299). 그런 측면에서 Borchert는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모델로 평가한다. (Borchert, 2002: 96).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구절은 모두 12개이다. (요한복음 1:17, 45; 7:19, 23, 49, 51; 8:5, 17; 10:34; 12:34; 15:25; 19:7). 이 12개의 구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① 화자(narrator)는 요한복음 1:17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은 두 개념을 상반되게 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은혜의 연속성을 말한다. (Michaels, 2010: 90).

② 요한복음 1:45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빌립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이 있다.

③ 요한복음 7:51에서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의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

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맥락을 본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뜻으로 쓴다.

④ 요한복음 7:49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묻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5). 또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말한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무리는 성경에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중립적인 뜻으로 쓴다.

⑤ 예수님은 요한복음 7:19, 23; 8:17; 10:34; 15:25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쓰신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요한복음 7:19).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한복음 7:23).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요한복음 8:17). 이는 신명기 17:6과 19:15를 인용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뜻으로 쓰지 않으신다.

Scar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긍정의 관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저주로 바꾸었다. 따라서 아무도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담은 “네가 해야 한다는 것”을 “네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고난으로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처음의 흠 없는 온전한 상태로 바꾸셨다.” (Scar, 2018: 18).

Loader는 마가, 마태와 누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연속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Loader, 2002: 123, 260, 379). Meier는 신약성경에서 쓰는 하나님의 법의 깊은 뜻은 구약성경의 칠십인역 (Septuagint) 성경과 같다고 설명한다. (Meier, 2009: 39).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Thompson, 2015: 300).

(2)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계명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해 말하는 구절은 모두 7개이다. (12:49-50; 13:34; 14:15, 21; 15:10, 12). 요한복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① 요한복음 12:49-50.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계명’을 쓴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신다. (Ferguson, 2016: 168).

② 요한복음 13:34.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요한복음 13:1, 34; 14:15; 15:12-13, 17). 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Thompson, 2015: 295).

③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신다. Keener는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요한복음 12:49),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으신다. (요한복음 10:18; 14:31). Lincoln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다. (Lincoln, 2005: 388). 이런 측면에서, 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 기능한다. Van der Merwe은 요한복음에 지키도록 명백히 말하는 세 개의 표현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아버지가 주신 일을 마치려고 ...’, ‘내 계명을 지켜라.’ (Van der Merwe, 2022: 3).

④ 요한복음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고 연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요한복음 15:9)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기초이다(요한복음 15:12). (Keener, 2003: 926).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는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은 늘 상호관계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4; 5:23). (Kanagaraj, 2013: 141).

⑤ 요한복음 15: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다.

⑥ 요한복음 15: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신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계시지 않을 때, 요한복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날마다 삶과 연결시킨다. 특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제자들의 의무와 연결시킨다. (Michaels, 2010: 758-759).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13:8-10)와 갈라디아서(6:2)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과 연결된다.

(3) 구약성경이 말하는 계명의 뜻

계명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계명’을 쓰고 있는 절을 살펴보면, 모두 74개의 절이 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직역을 바탕으로 한 성경 본으로 평가한다. 여기서는 NRSV를 기준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절을 살핀다. 성경 순서대로 계명이 나온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창세기 26:5
- (ii) 출애굽기 20:6; 24:12; 34:28
- (iii) 레위기 26:3, 15
- (iv) 신명기 4:13; 7:9; 8:2; 10:4; 17:20
- (v) 여호수아기 22:5
- (vi) 열왕기상 2:3; 6:12; 8:58; 9:6; 18:18; 열왕기하 17:34, 37; 18:6; 23:3
- (vii)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17:4; 19:10; 34:31
- (viii) 에스라기 7:11; 9:10, 14
- (ix) 느헤미야기 1:7, 9; 9:13-14, 34; 10:29
- (x) 욥기 23:12
- (xi) 시편 19:8; 78:7; 89:31; 112:1; 119:6, 10, 19, 21, 32, 35, 47-48, 60, 66, 73, 86, 9, 98, 115, 127, 131, 143, 151, 166, 172, 176
- (xii) 잠언 3:1; 13:13; 19:16
- (xiii) 전도서 12:13
- (xiv) 다니엘서 9:4-5

위에서 말한 구약성경에 ‘계명’을 포함하는 절을 분석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 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구별하지 않고 쓴다. (창세기 26:5; 출애굽기 24:12; 17:39; 역대지하

19:10; 느헤미야기 9:13-14).

②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20:6; 레위기 26:3; 신명기 4:13; 7:9; 8:2; 17:20; 여호수야기 22:5; 열왕기상 2:3; 6:12; 8:58; 9:6; 17:34, 39; 18:6; 23:3; 역대지상 28:7-8; 29:19; 역대지하 7:19; 34:31; 에스라기 9:10, 14; 느헤미야기 1:7, 9; 9:34; 10:29; 욥기 23:12; 시편 78:7; 89:31; 119:6, 10, 32, 60, 115, 166, 176; 잠언 3:1; 전도서 12:13).

③ 언약과 계명의 관계를 말한다. (레위기 26:15; 신명기 4:13; 7:9).

④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쓴다. (역대지하 17:4; 시편 119:66, 73, 86, 151; 잠언 19:16; 다니엘서 9:4-5).

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한다. (시편 19:8; 112:1; 119:35, 47-48, 98, 127, 131, 143, 172; 잠언 13:13).

⑥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계명을 말한다. (시편 119:19).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의 많은 요소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양떼와 목자에 대한 요한복음 10:1-21은 에스겔서 34:15, 23과 37:24의 요소를 가져온 것으로 설명한다. (Heilmann, 2018: 493). 구약성경에 있는 계명의 용례를 분석하면서, 요한이 사랑의 새 계명을 구약성경의 계명에 관한 질들과 의도적으로 관련하여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6.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도덕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이 폐기되었다는 사고(Scar, 2018: 3-4)는 하나님의 법을 단순한 ‘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있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좀 더 넓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Casselli, 2016: 90). 하나님의 법을 3개의 범주로 나눈다. (Ferguson, 2016: 171-173).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이다. 이는 근대 사회 이후 각국의 민법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는 제사에 대한 ‘제사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민법과 제사법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도덕’을 뜻하는 영어 단어 ‘moral’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외에 “성품과 행동의 선함을 가르치거나 보여줌 또는 성품과 행동의 선함을 교정함”이라는 뜻을 갖는다. (Bruce et al., 2000: 1144). 그런 뜻에서 ‘moral’이라는 단어를 ‘성품’ 또는 ‘품성’으로 옮길 수 있다. (Takebayashi, 2002: 1605). 따라서 ‘도덕법’(moral law)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이라는 뜻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도덕법’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18절에서 제사법과 도덕법을 구별한다. (Schreiner, 1989: 59). 도덕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법의 총체이다. (Voif, 2006: 157). 언약신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넣어두신 선과 악에 대한 기본개념을 도덕법으로 이해한다. (Sailhamer, 김윤희 역, 2013: 727). George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지를 외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덕법이 모세의 언약과 견주어 시기에 앞선다고 한다. (George, 1994: 342).

도덕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다. William은 신약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한 가장 현저한 예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찾으러 온 부자 젊은이의 이야기(마태복음 19:16-22)에 나온다고 한다. (William, 2017: 57). Rom-Shiloni는 십계명을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한다. (Rom-Shiloni, 2019: 135). 도덕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고는 1646년의 웨스터민스회 공회에서 인정되었다. 제14장 제5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그리고 교회의 장전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감리교 교회와 장전 제6조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반대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예법과 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도덕이라 일컫는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2020: 35-36). 법의 세 구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Kaiser 교수는 삼위일체 개념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Kaiser, 1990: 289-290).

III. 맺는말

신약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계명이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폐기했거나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과 하나님의 법이 상반된다는 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만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34-35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 사이의 관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첫째, 요한복음의 ‘새 계명’은 구약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법은 긍정적인 뜻으로 쓴다. 셋째, 요한복음에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지 않다. 넷째,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에 관한 절들은 요한복음의 새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사랑으로 설명한다(로마서 13:8-10; 갈라디아서 6:2). 이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일치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계명’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

님의 법'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쓰는 '율법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옳다. '율법적'이라는 표현을 많은 경우 부정하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은연중 '하나님의 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율법적'이라는 말을 부정의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글을 쓸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쓰고, 띄어 쓰고, 붙여 쓰고 하는 약속이 '문법'이다. 문법을 어려워 한다. 반대로 문법 없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글을 쓴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길까? 이러한 원리는 세상의 교통법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연약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무너지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창세기 1:2).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생기게 하셨다. (창세기 1:3).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둡고 무질서한 곳에 빛을 주셨고, 질서를 만드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우월하다는 생각은 교만이고, 그런 상태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의 태도를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생기는 자기 연민(나르시시즘)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한다. 요한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한다. (요한1서 5:3-5).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반대로 보는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에 빠진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인식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의 세 구분에 따른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의 힘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 2:43-47의 초대 교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따라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은 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근대와 현대 사회에 많은 법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법도 하나님의 법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현재 교회 공동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려한다. 그런데 홍성수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기초가 되는 “차별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유, 분야, 판단기준과 예외와 같은 많은 논점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홍성수, 2022: 819).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갈 때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힘을 얻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을 점검하는 힘을 갖는다.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지금 민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회의 분열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영남 (2000).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o, Y. N. (2000). *A Study on the Limits of the Classical Theory of the Contract Law - On the basis of the Reliance Theory in Anglo-American Law*.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곽윤직·김재형 (2015). **민법총칙**. (제9판). 서울: 박영사.
- [Kwak, Y. J. & Kim, J. H. (2015). *General Part of Civil Law*. Seoul: Parkyoungsa.]
- 기독교대한감리회 (2021).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서출판 kmc.
- [The Korean Methodist Church (2021). *The Articles of Religion of the Methodist Church*. Seoul: Kmc.]
- 공두현 (2022).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간존엄의 미래. in 윤진수·한상훈·안성조 편저 (2022) **법의 미래**. 서울: 법문사, 850-864.
- [Kong, D. H. (2022). Demographic Changes and the Future of Human Dignity. in Yoon, J. S. Han, S. H, and Ahn, S. J. (Ed.) (2022). *The Future of Law*. Seoul: Bupyoungsa.]
- 권연경 (2013).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Kwon, Y. K. (2013). *How do we read Galatians*. Seoul: Scripture Union Korea.]
- 김선중 (2015). 에스겔의 계약 신학. **Canon&Culture**, 9(1), 107-131.
- [Kim, S. J. (2015). Covenant Theology in the Book of Ezekiel. *Canon&Culture*, 9(1), 107-131.]
- 김윤희 역 (2013). **모세 오경 신학 - 오경의 계시와 구성, 해석과 의미들**, Sailhamer, J. (2009).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서울: 새물결플러스.
- [Kim, Y. H. (2013).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 Revelation, Composition, Interpretation*. Seoul: Holy Wave Plus Publishing. Trans. Sailhamer, J. (2009). *The Meaning of the Pentateu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 김준호 (2017). **민법강의**. (제23판). 서울: 법문사.
- [Kim, J. H. (2017). *Lecture of Civil Law*. (23rd ed.). Seoul: Bupmunsa.]
- 김형익 (2018). **율법과 복음: 속박에서 자유로 가는 여정**. 서울: 두란노서원.
- [Kim, H. I. (2018). *Law and Gospel: A Journey from Bondage to Freedom*. Seoul: Duranno.]
- 김형배 (1997). **채권각론: 계약법**. 서울: 박영사.
- [Kim, H. B. (1997). *Law of Obligations - Special Parts: Law of Contracts*. Seoul: Parkyoungsa.]

- 김형배 (1998). **채권총론**. (제2판). 서울: 박영사.
- [Kim, H. B. (1998). *Law of Obligations - General Parts*. Seoul: Parkyoungsa.]
- 김형배 (2007). **노동법**. (제3판). 서울: 박영사.
- [Kim, H. B. (2007). *Labor Law*. (3rd ed.) Seoul: Parkyoungsa.]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서울: 신조사.
- [Kim, H. B., Kim, K. W. & Kim, M. S. (2016). *Lecture of Civil Law Study*. (15rd ed.). Seoul: Shinjosa.]
- 문병호 역 (2009). **기독교 강요**, Calvin, J.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서울: 생명의 말씀사.
- [Moon, B. H. (200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Seoul: lifebook. Trans. Calvin, J.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Geneva: Basile AE.]
- 문홍선 (2008). **율법과 복음에 관한 새 관점에 대한 비판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Moon, H. S. (2008). *The Criticism and Study of "New Perspective" of Law and Gospel*. Doctoral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박동진 (2016). **계약법강의**. 서울: 법문사.
- [Park, D. J. (2016). *Lecture of Contract Law*. Seoul: Bupmunsa.]
- 백경일 (2022). **민법총론**. (제3판). 서울: 고래시대.
- [Paik, K, I. (2022).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23rd ed.). Seoul: Parkyoungsa.]
- 배원달 (1989). 법가사상에 관한 연구 - 상양(商殃)과 한비(韓非)를 중심으로 -. **안동문화총서**, 1(1), 667-690.
- [Pae, W. D. (1989). A Study on the Beopga Thought - Focusing Sanggang and Hanbi. *Andong Culture Journal*, 1(1), 667-690.]
- 손규태 (2004).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hn, G. T. (2004). *The Theology and Ethics of Martin Luther*.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손성현 역 (2017). **마르틴 루터: 새 시대를 펼친 비전의 개혁자**, Hendrix, S. H. (2017). *Martin Luther: Visionary Reformer*. 서울: IVP.
- [Sohn, S. H. (2017). **Martin Luther**. Seoul: IVP. Trans. Hendrix, S. H. (2017). *Martin Luth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송덕수 (2021). **민법총칙**. (제6판). 서울: 박영사.
- [Song, D. S. (2021). *General Part of Civil Law*. (6th ed.). Seoul: Parkyoungsa.]

- 송덕수 (2022). **채권각론**. (제6판). 서울: 박영사.
- [Song, D. S. (2022). *Law of Obligations - Special Parts*. (6th ed.). Seoul: Parkyoungsa.]
- 양창수 역 (1995). **정당한 법의 원리**, Larenz, K. (1979).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서울: 박영사.
- [Yang, C. S. (1995).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Seoul: Parkyoungsa. Trans. Larenz, K. (1979). *Richtiges Recht: Grundzüge einer Rechtsethik*. München: C. H. Beck.]
- 양형우 (2022). **민법의 세계**. (제13판). 서울: 정독.
- [Yang, H. W. (2022). *World of Civil Law*. (13rd ed.). Seoul: Chungdok.]
- 윤재왕 역 (2010). **법철학** (제2판), Seelmann, K.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서울: 세창출판사.
- [Yoon, J. W.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Seoul: Sechang Publisher. Trans. Seelmann, K. (2010) *Rechtsphilosophie* (2nd ed.). München: C. H. Beck.]
- 윤형렬 (2013). **민법총칙**. (제4판). 서울: 법영사.
- [Yoon, H. R. (2013). *General Part of Civil Law*. (4th ed.). Seoul: Bupyongsa.]
- 이재근 역 (2018). **칼뱅**, Gordon, B (2009). *Calvin*. 서울: IVP.
- [Lee, J. G. (2017). *Calvin*. Seoul: IVP. Trans. Gordon, B. (2009). *Calvi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이진남 역 (2022).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8 법**, Aquinatis, T. (1485). *Summa Theologiae*. 서울: 바오로딸.
- [Lee, J. N. (2022). *Summa Theologiae*. Seoul: Pauline. Trans. Aquinatis, T. (1485). *Summa Theologiae*. Basel: Michael Wenssler.]
- 정기웅 (2015). **민법총칙**. (제4판). 서울: 법문사.
- [Chung, K. W. (2015). *General Part of Civil Law*. (4th ed.). Seoul: Bupmunsa.]
- 정성묵 역 (2019). **온전한 그리스도**. Ferguson, J. B. (2016). *The Whole Christ*. 서울: 두란노.
- [Chung, S. M. (2019). *The Whole Christ*. Seoul: Doryanno. Trans. Ferguson, J. B. (2016). *The Whole Christ - Legalism, Antinomianism, & Gospel, Assurance -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Crossway.]
- 정옥배 역 (2017). **데살로니가전후서 강해**. Stott, J. (1991).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 Preparing for the coming King*. 서울: IVP.
- [Chung, O. B. (2017). *The Lecture of 1&2 Thessalonians*. Seoul: IVP. Trans. Stott, J. (1991). *The Message of 1&2 Thessalonians - Preparing for the coming King*.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조봉상 (2018). **왜 신약교회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서울: 포도나무출판사.
- [Cho, B. S. (2018). *Why should the New Testament Church keep laws?* Seoul: Grape Tree Publisher.]
- 지원림 (2022). **민법강의**. (제19판). 서울: 홍문사.
- [Ji, W. R. (2022). *Lecture of Civil Law*. (19th ed.). Seoul: Hongmunsa.]
- 최종태 (1999). 결혼으로서의 시내산 언약. **Acts신학과 선교**, 3, 287-341.
- [Choi, J. T. (1999). The Sinai Covenant as Marriage. *Acts Theology and Mission*, 3, 287-341.]
- 최주훈 역 (2017). **마르틴 루터 대교리문답**. Luther, M. (1529). *Der Große Katechismus*. 서울: 복 있는 사람.
- [Choi, J. H. (2017). *Der Große Katechismus*. Seoul: BokItnewsaram. Trans. Luther, M. (1529). *Der Große Katechismus*. Zwickau: Johannes Herrmann.]
- 최주훈 역 (2019). **마르틴 루터 95개 논제**. Luther, M. (1517). 95 Theses. 서울: 감은사.
- [Choi, J. H. (2019). *95 Theses*. Seoul: Kameunsa. Trans. Luther, M. (1517). *95 Theses* Wittenberg: Hans Lufft.]
- 하경호 (201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경영법률**, 23(2), 471-503.
- [Ha, K. H. (2013). Legislative tasks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23(2), 471-503.]
- 한동구 (2020). 고대 이스라엘의 인권사상. **현상과 인식**, 44(1), 141-158.
- [Han, D. G. (2020). Thought of Human Rights in Ancient Israel. Phenomenon and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44(1), 141-158.]
- 한삼인 (2011). **계약법**. 서울: 화산미디어.
- [Han, S. I. (2011). *Law of Contracts*. Seoul: Hwasanmedia.]
- 현승중·조규창 (1996). **로마법**. 서울: 법문사.
- [Hyun, S. J. & Cho, K. C. (1996). *Roman Law*. Seoul: Bupyoungsa.]
- 황규학 (2014). **교회분열시 재산귀속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Hwang, K. H. (2014). *A Comparative Study on Church Property Ownership*.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홍병룡 역 (2011).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 McGrath, A. (2009). *Heresy*. 서울: 포이에마.
- [Hong, B. R. (2011). *Heresy*. Seoul: Poiema. Trans. McGrath, A. (2009). *Heresy*. New York: Harper Collins.]

- 홍성수 (2022). 차별금지사유,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차별금지 법정책의 미래. in 윤진수·한상훈·안성조 편저 (2022) **법의 미래**. 서울: 법문사, 818-834.
- [Hong, S. S. (2022). How can we determine prohibited discrimination grounds - Future of anti-discrimination legal policy. in Yoon, J. S. Han, S. H, and Ahn, S. J. (Ed.) (2022). *The Future of Law*. Seoul: Bupyoungsa.]
- 홍성재 (2016). **민법총칙**. (제6판). 서울: 대명문화사.
- [Hong, S. J. (2016). *General Part of Civil Law*. (6th ed.). Seoul: Daemyungmunwhasa.]
- 홍지훈 (2017). “고발하는 율법”과 “살리는 복음”: 마르틴 루터의 율법과 복음 구별하기. **신학과 교회**, 8, 149-183.
- [Hong, J. H. (2017). Accusing Law and Saving Gospel: A Distinguishing Law and Gospel by Martin Luther, *Theology & Church* 8, 149-183.]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21Me14258 Decided June 16, 2022.]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27688 Decided August 11, 2022.]
- Barclay, W. (1972). *The Old Law & The New Law*. Edinburgh: The Saint Andrew.
- Bauer's, W. & Danker, F. W. (1979).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asley-Murray, G. R. (1999). *John: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6. Grand Rapids: Zondervan.
- Borchert, G. L. (2002). *John 12-21: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25b. Nashville: Broadman & Holman.
- Brown, F. Driver, S. & Briggs, C. (1906).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 Bruce, N., Pickett, J. P. & Leonesio, C. (2000).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Carlson-Thies, S. (2021). Love God Totally,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 How Religious Freedom Enables Us to Obey both Great Commandments in our Time.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48(2), 200-216.

- Carson, D. A. (1991).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 Casselli, S. J. (2016). *Divine Rule Maintained: Anthony Burgess, Covenant Theology, and the Place of the Law in Reformed Scholasticism*.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 Chang, W. (2014). The Love Commandment (John 13:34-35). *Asia Journal of Theology*, 28(2), 263-282.
- DeSilva, D. A. (2018). *The Letter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Edwards, M. (2004). *John: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Oxford: John Wiley & Sons.
- Estrada III, R. G. (2019). *A Pneumatology of Race in the Gospel of John: An Ethnocritical Study*. Eugene: Pickwick.
- Ferguson, S. B. (2016). *The Whole Christ: Legalism, Antinomianism, and Gospel Assurance: Why the Marrow Controversy Still Matters*. Wheaton: Crossway.
- Fried, C. (1981). *Contract as Promise: A Theory of Contractual Oblig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Fung, R. Y. K. (2018).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Gard, D. L. (2010). The Church's Scripture and Functional Marcionism.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74(3-4), 209-224.
- George, T. (1994). *Galat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0. Nashville: B&H.
- Gupta, N. K. (2020). *A Beginner's Guide to New Testament Studies: Understanding Key Debat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Haenchen, E, R. Funk W. & Busse U. (1984). *John 2: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Chapters 7-21*. Philadelphia: Fortress.
- Hartley, J. E. (1992). *Levitic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 Heilmann, J. (2018). A Meal in the Background of John 6:51-58.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2), 481-500.
- Hogg, M. (2011). *Promises and Contract Law - Comparative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bes, K. H. & Silva, M. (2015).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Johnson, T. K. (2019). *Law and Gospel: The Hermeneutical and Homiletical Key to Reformation*

- Theology and Ethics.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43(1), 53-70.
- Kaiser Jr., W. C. (1990). God's Promise and His Gracious Law.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3, 289-302.
- Kanagaraj, J. J. (2013). *John: A New Covenant Commentary*. Cambridge: Lutterworth.
- Keener, C. S. (2003).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Peabody: Hendrickson.
- King Jr., J. B. (2020). Toward law-gospel harmony in Lutheran theology and ethics.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59(3), 225-232.
- Lincoln, A. T. (2005).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ew York: Continuum.
- Loader, W. R. G. (2002). *Jesus' Attitude towards the Law: A Study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 Luther, M. (1520). The Freedom of a Christian. in Russell, W. R. & Lull T. (E.d.) (1989).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Minneapolis: Fortress Press.
- McGraw, R. M. (2016). The Threats of the Gospel - John Owen on what the Law/Gospel Distinction Is Not. *Calvin Theological Journal*, 51(1), 79-111.
- Meier, J. P. (2009). *A Marginal Jew -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 4: Law and Love. New Haven: Yale University.
- Michaels, J. R. (2010).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 O'Donovan, O. (2014). Flesh and Spirit. in Elliott, H. M. & Hafemann, S. J., Wright N. T. and Frederick, J. (Ed.) (2014). *Galatians and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Perry, J. M. (2008).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 in Witte Jr., J. & Alexander F. S. (Ed.) (2008). *Christianity and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om-Shiloni, D. (2019). The Decalogue. in Barmash, P. (Ed.) (2019). *The Oxford Handbook of Biblic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car, D. P. (2018). The second question and answer of the Heidelberg Catechism (1563) clearly used this framework for preaching the Reformation faith. *Concordia Theological Quarterly*, 82(1-2), 3-18.
- Schreiner, T. R. (1989). The Abolition and Fulfillment of the Law in Pau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11(35), 47-74.
- Scott, R. E. & Kraus, J. S. (2013). *Contract Law and Theory* (5th ed.). New Providence: LexisNexis.
- Takebayashi, S. (2002). *Kenkyusha's New English-Japanese Dictionary* (Sixth ed.). Tokyo:

Kenkyusha.

Thompson, M. M. (2015). *John: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Van der Merwe, D. G. (2022). The concept and activity of 'obedience' in the Gospel of John. *Verbum et Ecclesia*, 43(1), 1-9.

Voif, M. (2006). *Free of Charge: Giving and Forgiving in a Culture Stripped of Grace*. Grand Rapids: Zondervan.

William S. M. (2017). *An Introduction to Biblical Law*. Grand Rapids: Eerdmans.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Law in Church Communities

고 세 일 (충남대학교)

논문초록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현실과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부담으로 여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법’을 좋지 않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좋은 대상으로 바라보는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사회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대답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현재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의 저자들은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런 교회공동체의 판례 사안을 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공동체는 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오해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현대 사회의 많은 법은 근대 사회를 표본으로 한 것이고, 표본의 근간을 합리성에 둔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여러 법 제도는 성경의 법에 근거를 둔다. 현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에서 법의 관점을 본다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시고 주신 십계명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이 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을 제시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은 종교개혁자들의 영향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의 사고를 오해한 것에서 나왔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이라는 종교개혁의 구호도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반대로 보는 시각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의 3중 구분에 따른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실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행전 2:43-47의 초대 교회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법도 하나님의 법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주

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힘을 얻는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길 때, 여러 민법 교과서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 분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주제어: 하나님의 법, 복음, 율법, 계명, 도덕법, 요한복음